

	원격수업 운영규정	문서번호	3-4-17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1. 02. 25.		
		페이지	1/4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 37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방송·통신 수업의 방법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하여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.

제3조(위원회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
5. 원격수업 관련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(교무처장,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장)과 총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교과목의 개설) ① 원격수업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격수업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원격수업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개발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교과목의 구성) ①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는 학습목표, 학습내용 동영상 및 상호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1차시당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으로 하며,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25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상호 학습활동 요소별 1차시 당 학습시간 인정 기준은 [별표1]와 같다.

④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상호 학습활동은 반드시 본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

	원격수업 운영규정	문서번호		3-4-17	
		제정일		2017. 06. 20.	
		개정일		2021. 02. 25.	
		페이지	2/4	관리 부서	교무처

여 진행한다.

제6조(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중간시험,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주차 이상으로 한다. 단, 계절학기 등의 수업일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업의 내용 구성은 담당 교수와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가 협의하여 개발한다.

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인원은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.

④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출석 및 평가관리) ① 원격 수업의 출석 인정기간 동안 각 차시별 기준시간 이상 수강 완료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중간시험, 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수방법과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
③ 시험 실시 방법 및 학습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제8조(원격수업 교과목의 질관리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운영, 성적처리 및 강의평가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
② 원격수업의 질관리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
③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강의 운영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, 수정, 보완, 폐지 등을 결정한다.

제9조(저작권) ①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저작권은 개발교수에게 귀속하고, 저작재산권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.

② 본 대학의 동의 없이, 개발된 콘텐츠를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③ 개발된 콘텐츠를 제3자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④ 강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	원격수업 운영규정		문서번호	3-4-17		
	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	개정일	2021. 02. 25.		
			페이지	3/4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	원격수업 운영규정	문서번호	3-4-17		
		제정일	2017. 06. 20.		
		개정일	2021. 02. 25.		
		페이지	4/4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1]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상호 학습활동 요소별 1차시 당 학습시간 인정 기준

학습시간 인정기준			
과제	1편당	10분	
토론	1개당	해당시간	
퀴즈	1개당 (단답형)	1분	
	1개당 (서술형)	10분	
기타			

* 기타 학습활동의 요소별 인정시간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